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땐 공제 안돼

■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런 건 조심하세요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 줄어든다. 대중교통의 신용카드 결제, 오피스텔 월세, 자녀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셈법만큼 자칫하면 과다공제 등의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이러한 실수 방지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7일 그간의 사례를 정리해 근로소득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소개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못 받는다.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자녀 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한다.

소득 있는 형제·자매, 부모 이중·삼중 공제 못해

천도재·49재 비용 지급 기부금 영수증 해당안돼

형제·자매 부모를 이중·삼중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안된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올해 연말까지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인지의 여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도 불가하다. 천도재, 49재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공제도 안된다.

연금저축·보험료 과다공제

72만원 한도로 납인금액의 40%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면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관계자들이 18일 광주시 동구 광주중앙초등학교를 방문, 학교도서관에 700여권의 신간도서를 기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중앙초교에 신간도서 700권 기증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8일 롯데장학재단과 함께 광주중앙초등학교를 방문, 신간도서 700여권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흔히 보기 어려웠던 팝업북을 비롯해 역사, 교과서 관련 위주로 구비했고 액수로는 1000여만원 어치다.

학교 측은 이들 도서 목록을 따로 만들어 학생들이 손쉽게 원하는 책을 골라보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도서 기증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펼치는 사업의 하나로 도서 기증을 해오고 있다.

이번 광주중앙초등학교를 포함해 올해에만 선명학교, 방림초등학교, 용봉중학교 등 광주시내 총 4개 학교에 신간도서 4000여권을 기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은행 비리 임직원 424명 징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

끝없이 터져나온 부실 및 비리 사고로 올해 은행 임직원 420여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규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임원이 18명, 직원이 406명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순이었다.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은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한차례,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나 받았다. 국민은행도 기관주의를 받는 등 총 7개 은행이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올해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5억6670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중고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놓치기 쉬운 항목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지난 17일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발표한 근로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토대로 꼭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를 안내한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자녀의 교복을 샀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군 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조훈구 광주본부세관장(왼쪽 두번째)이 18일 해맑은그룹홈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8일 연말연시를 맞아 북구 소재 해맑은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특히, 이번 위문 행사는 지난 11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의향서 체결에 따라 구입한 상품권으로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산구 월곡전통시장 등을 방문, 위문품을 구매했다.

조훈구 광주본부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며 "올해는 운영 여건이 어려운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연말연시 소외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위문하고 있으며 매월 광주보훈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잇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